

## ○○초 조리실무사 산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

<b>소송종류</b>	민사소송	<b>법원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21나○○○○○ [2심]	<b>사건유형</b>	손해배상(산)
<b>원고</b>	○○○	<b>피고</b>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<b>판결선고일</b>	[2심]2022. 3. 31. 원고일부승	<b>비고</b>	[1심]2021. 2. 9. 원고일부승
<b>사건개요</b>	<p>○ 원고는 2017. 10. 17. 인천○○초등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에서 2인 1조로 진행되는 집기류 열탕소독 중 다른 조리실무사인 ○○○이 솥 안의 뜨거운 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원고의 장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과 발목의 심재성 2도 화상, 우측 하지의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음.</p> <p>○ 이 사고는 피고가 관리 감독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, 피고는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조리실을 안전하게 관리,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</p>		
<b>주 문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li> <li>피고는 원고에게 25,452,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17.부터 2022. 3. 3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li> <li>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</li> <li>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1/2씩 부담하고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1/2씩 부담한다.</li> </ol>		
<b>1심 및 2심 판결요약</b>	<p>○ 피고보조참가자 ○○○에게는 원고에게 위험을 분명히 고지하지 않은 채 혼자서 열탕소독 작업을 감행한 과실이 인정되고, ○○○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뜨거운 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구인 조임 기능까지 갖춘 장화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‘위험 말하기’ 운동이 실제 작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피고가 피용자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.</p> <p>○ 다만, 원고도 만연히 국솔 앞에서 앞치마 세척을 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%로 제한.</p>		